

정화조 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안)

의안번호 114

제안일자 : 1996. 9. 13.
제안자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조사기간은 49일간으로 한다.(96. 9. 13.~96. 10. 31.)
- 조사대상은 마포구청으로 한다.
- 조사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한다.
- 조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정화조 업무실태에 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 (안)

(’96. 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調查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調查期間

1996. 9. 13.(금)~1996. 10. 31.(목)[49일간]

調查實施對象機關

마포구청(시민국), 해당 관련업체

調查委員會 編成 및 調查場所

구분	조사위원	대상기관	조사장소	사무직원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인구 간사 유동균 위원 김순남, 박상수 이진표, 채재선 한대운	마포구청 (시민국) 해당관련 업체	행정사무 조사특별 위원회실	김건재 전문위원 임민상 이준범

調查할 事案의 範委

- 정화시설 내부청소 업무 추진실태
- 대행업체와의 계약기준 및 관리현황과 실태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적정성

(다음 페이지에 계속)

調査日程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단계	'96. 9. 13.	* 조사관계 자료 수합	1차 위원회
		* 조사계획서 수립, 채택(위원회)	
	9. 16.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2차 위원회
		* 조사계획 통보	
9. 30.	* 조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채택, 이송	
	10. 6.	*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서 채택, 이송	
실시단계	'96. 10. 7.	* 조사의견 상정	
		*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조사할 사안에 대한 보고	
		* 조사 실시	
	'96. 10. 31.	* 조사 종결	
조치사리 결단과 과계	'96. 10. 31.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96. 10. 31.	*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위원회)	
	41회 임시회	* 조사결과 보고(본회의)	
		*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調査要領

조사는 시민국 청소과의 정화조 업무 건반에 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所要豫算

○ 조사실시에 따른 위원회 간담회비
7인 * 20,000 * 10일 = 1,400,000원

行政事項

- 가. 위원장은 조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나. 위원장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